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30

서 울 고 등 법 원

제 8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누58913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redacted]공사
피고, 피항소인	1.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3.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4.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9. 10. 선고 2015구합63531 판결
변 론 종 결	2016. 4. 8.
판 결 선 고	2016. 4.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 대하여,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2014. 9. 10. 한 재산세 53,615,670원의 부과처분 중 51,489,8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2014. 9. 10. 한 재산세 24,332,620원의 부과처분 중 23,367,83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2014. 9. 10. 한 재산세 23,798,660원의 부과처분 중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30

22,855,04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2014. 9. 15. 한 재산세 7,848,760원의 부과처분 중 7,537,5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1983. 8. 18. [redacted]정부(출자금 8,000,000,000원, 지분율 61.2%)와 [redacted]공사(출자금 5,072,000,000원, 지분율 38.8%)의 출자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 현재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하여 공공기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1986년경 [redacted]시가 처음으로 원고가 발행한 400,000주의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율 3.12%를 획득하였고, 2014. 6. 1.경 원고의 주요주주는 정부(26.15%), [redacted]공사(20.47%), [redacted]단체([redacted]시 3.34%, [redacted]도 1.02%, [redacted]광역시 0.57%, [redacted]광역시 0.55%, [redacted]도 0.49%, [redacted]광역시 0.35%, [redacted]도 0.34%, [redacted]광역시 0.32%, [redacted]광역시 0.28%, [redacted]도 0.26%, [redacted]도 0.22%, [redacted]도 0.16%, [redacted]도 0.04% 등 합계 7.93%), 일반 주주(39.21%) 등이다.

다.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은 구 [redacted]시 [redacted]구 구세 감면조례(2012. 3.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30

30. [redacted]시 [redacted]구 조례 제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에 따라,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은 구 [redacted]시 [redacted]구 구세 감면 조례(2012. 5. 17. [redacted]시 [redacted]구 조례 제9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에 따라,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은 구 [redacted]시 [redacted]구 구세 감면조례(2012. 3. 22. [redacted]시 [redacted]구 조례 제8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에 따라,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은 구 [redacted]시 [redacted]구 구세 감면조례(2012. 5. 21. [redacted]시 [redacted]구 조례 제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각 조례를 통틀어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3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각 관할구역 소재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일정 비율(민간출자분 비율을 제외한 부분)을 감면하여 왔다.

라. 피고들은 원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음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각 관할구역 소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감면 없이 2014년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를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순번	처분청 (피고)	처분일자	재산세 부과금액
1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014. 9. 10.	53,615,670 원
2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014. 9. 10.	24,332,620 원
3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014. 9. 10.	23,798,660 원
4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014. 9. 15.	7,848,760 원

마. 원고는 2014. 12. 2. 이 사건 처분 등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30

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15. 2. 1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결정은 2015. 2. 2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 5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다 제1호증, 을라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지방자치단체는 원고의 설립등기 당시부터 자본금 납입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관련부처와의 협의가 지체되어 납입이 지연된 것이고, 이 사건 감면조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라는 문언은 반드시 설립시의 최초 자본금 납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원고는 1986년 말 설립목적인 천연가스공급을 본격적으로 개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인 [redacted]시 등이 원고의 지분을 취득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설립되었으므로, 원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한다.

② 한국가스공사법 제18조에 따라 원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데, 이 사건 감면조항의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라는 문언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상법에 근거하여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한다.

③ 입법자의 의도는 지방세 감면대상은 유지하되 감면비율만 축소하고자 한 것이며, 원고와 사실상 지위가 동일한 [redacted]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만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전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30

세액에 감면비율인 100분의 50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비율인 7.93%를 곱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감면조항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공기업법(2014. 3. 24. 법률 제12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으로 '지방공사'(제3장), '지방공단'(제4장),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등'(제4장의2)을 규정하면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등'에 대하여 제77조의3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등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감면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의 공익적 성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30

을 고려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사회 정책 등에 부응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의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미리 확정되고, 다만 실제 출자·출연행위는 관계기관의 업무 협의,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설립과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이 설립등기 후에 이루어진 법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감면조항이 출자법인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종전에 조례에서 정하였던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법률로 정하면서 그 감면한도를 축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이 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지방공기업으로 한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출자법인이 상법에 따라 설립되지 아니하더라도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면 주식이 발행되고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익이 주주에게 배당되는 등 주식회사의 본질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는 점,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을 오로지 상법상의 절차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로 해석할 경우에는 공공성이 강한 법인이 이윤의 창출을 추구하는 주식회사보다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어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상법상 주식회사의 성격을 갖는 법인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47898 판결 등 참조).

2)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30

가)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1982. 12. 31. 법률 제3639호로 제정된 한국가스공사법(이하 '구 한국가스공사법'이라 한다)은, 원고를 법인으로 설립하고(제2조), 자본금을 2천억 원으로 하되(제4조 제1항), 위 자본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출자하도록 정하였다(제4조 제2항).

나) 원고는 구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와 [redacted]공사의 출자를 받아 1983. 8. 18. 설립등기를 마쳤는데, 2014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4. 6. 1. 현재 원고의 주요 주주는 정부 26.15%, [redacted]공사 20.47%, 지방자치단체 7.93%이다.

3) 위 인정사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구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및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원고에 대한 자본금 출자를 예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설립되었고, 그 후 그 예정된 바에 따라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4) 정당한 세액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하는 경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의 정당한 세액은 이 사건 각 처분금액에서 이 사건 각 처분금액의 100분의 50에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4. 6. 1.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인 7.93%를 곱한 금액(아래 표 '불복금액'란 기재 금액)을 공제한 액수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아래 표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30

처분청	처분일자	처분금액(A)	불복금액 (B = A × 7.93% × 50%)	정당한 세액 (= A - B)
[redacted]구청장	2014. 9. 10.	53,615,670	2,125,870	51,489,800
[redacted]구청장	2014. 9. 10.	24,332,620	964,790	23,367,830
[redacted]구청장	2014. 9. 10.	23,798,660	943,620	22,855,040
[redacted]구청장	2014. 9. 15.	7,848,760	311,210	7,537,550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필곤

판사 손삼락

판사 김용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30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해당 지방공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공기업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감면한다.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감면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감면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이하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30

조에서 "출자·출연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가. 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출자한 주식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 수의 비율

나. 출연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총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재산(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출연한 재산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것으로 본다)의 비율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 구 한국가스공사법(1986. 5. 12. 법률 제3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가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2천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자본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반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출자는 현금외의 재산으로도 할 수 있다.

④ 공사의 자본은 이를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제5조 (주식의 발행)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공급과 그 부산물의 정제·판매
2. 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공급망의 건설·운영
3. 천연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
4. 액화석유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30

② 공사는 제1항 각호의 사업외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행한다.

제31조 (토지등의 수용·사용)

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거나 이 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하며, 그 적용에 있어서는 공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 한국가스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가스공사를 설립하여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제11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3.30>

1. 천연가스[액화(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공급과 그 부산물(부산물)의 정제·판매
2. 천연가스의 인수기지(인수기지) 및 공급망의 건설·운영
3. 천연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
4. 액화석유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7.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공사는 국제 석유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외의 석유자원의 탐사·개발 사업과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③ 공사에 관하여 이 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구 한국가스공사법 시행령(1986. 10. 6. 대통령령 제11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30

제3조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천만주로 하고, 1주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제4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공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0만주 이상으로 한다.

제5조 (주식의 발행시기 및 주금의 납입액등)

① 국가가 인수할 주식의 발행시기·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한다.

② 서울특별시가 인수할 주식의 발행시기·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③ 한국전력공사가 인수할 주식의 발행시기·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④ 일반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경우의 주식의 발행시기·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 구 한국가스공사법 시행령(1991. 7. 1. 대통령령 제13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주식의 발행시기 및 주금의 납입액등)

①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할 주식의 발행시기와 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과 각각 협의를 거쳐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② 한국전력공사가 인수할 주식의 발행시기와 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③ 일반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경우의 주식의 발행시기·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 구 지방공기업법(2014. 3. 24. 법률 제12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49조(설립)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30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안전행정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6조(설립·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제77조의3(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30

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1. 공기업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2. 준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4.「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 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2012. 3. 30.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제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②「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2012. 5.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례 제992호로 개정되기 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30

의 것)

제6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②「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조례(2012. 3. 22.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8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②「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조례(2012. 5. 21.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②「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끝.